

별첨3 채용비위 피해자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

□ [1단계] 이의 신청 및 처리

- ① 채용비위 피해자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날 이후 **14일 이내**에 이의 신청서([별첨4] 양식)를 작성하여 재단 채용 담당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할 수 있다.
- 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감사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.
- ③ 감사부서는 이의신청 사안에 대하여 조사 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.
- ④ 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.
- ⑤ 이사장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.

※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

- 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- 2) 평가 관련 개인정보(응시자, 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□ [2단계] 피해자 구제

- 채용비위 피해자는 다음 표에 따라 처리한다.

구분	피해발생 단계	처리방법
① 피해자 특정 가능: 직접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의 바로 다음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	최종 면접단계 피해	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
	서류단계 피해	해당 피해자 최종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
② 피해자 특정 불가능: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피해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	최종 면접단계 피해	피해자 그룹 최종 면접심사 재실시
	서류단계 피해	피해자 그룹 서류심사 재실시

※ 채용비위 피해자: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